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입국자에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3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주요 내용별 검토	4
3. 관련기관 의견	13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12. 30.
- (3) 회 부 일 : 2025. 12.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 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 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검역감염병 정보 제공)</u> ① <u>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 검역감염병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2. 주요 내용별 검토

□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등 「검역법」상 8종과 뎅기열, 치쿤쿠니아열 등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10종 등 총 18종이며¹⁾, 2025년 국내 검역감염병 현황을 보면, 뎅기열 108명, 치쿤쿠니아열 9명, 지카바이러스감염증 3명, 홍역 78명 등임.

< 검역감염병 국내외 발생 현황(2024~2025년) >

감염병명	국내		국외		
	'24년	'25년	'24년	'25년	주요 발생국
콜레라	-	-	809,561	542,114	예멘, 아프가니스탄
페스트	-	-	265	11	DR콩고, 미국
황열	-	-	1,185	304	콩고, 브라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	-	-	121	80	중국, 미국

1) 「검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페스트
- 다. 황열
-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바. 신종인플루엔자
-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20호)」

제1조(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①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3. 위 각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감염병명	국내		국외		
	'24년	'25년	'24년	'25년	주요 발생국
신종인플루엔자	-	-	-	-	-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	-	8	12	사우디아라비아
에볼라바이러스병	-	-	-	78	콩고
폴리오	-	-	556	237	예멘, 나이지리아
덴기열	196	108	14,507,832	4,933,256	브라질, 필리핀
치쿤구니아열	9	9	462,651	363,696	브라질, 쿠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3	45,013	25,487	브라질, 볼리비아
홍역	49	78	359,591	207,742	몽골, 키르기스스탄
마버그열	-	-	66	22	르완다, 에티오피아
라싸열	-	-	1,408	1,026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1,751	984	아프가니스탄
신종감염병증후군	-	-	-	-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	7	8	방글라데시, 인도

* 자료: 질병관리청

□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은 2024년까지는 반기별로 2025년부터는 분기별로 지정·해제하고 있으며, WHO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거나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추가로 지정하기도 함. 2026년 1분기 검역관리지역은 15개 검역감염병에 대해 167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은 4개 검역감염병에 대해 25개국이 지정되어 있음.

< 2025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일자	주요내용
'25.02.20	■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지정 - 에볼라바이러스병 7개국 지정
'25.03.20	■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해제 - 중점검역관리지역: 3개 검역감염병(19개국→18개국) - 검역관리지역: 14개 검역감염병(159개국→167개국)
'25.06.19	■ '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해제

일자	주요내용
	- 중점검역관리지역: 3개 검역감염병(18개국→20개국) - 검역관리지역: 15개 검역감염병(167개국→180개국)
'25.7.30	■ 치쿤구니아열 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 치쿤구니아열 3개국 지정
'25.8.21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검역감염병 추가 및 검역관리지역 지정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개국 지정
'25.9.18	■ '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해제 - 중점검역관리지역: 4개 검역감염병(20개국→21개국) - 검역관리지역: 16개 검역감염병(182개국→188개국)
'25.12.12	■ '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해제 - 중점검역관리지역: 4개 검역감염병(21개국→25개국) - 검역관리지역: 15개 검역감염병(188개국→167개국) ■ 엠폭스 검역감염병 및 검역관리지역 해제

* 자료: 질병관리청

□ 현재 해외 출국자에 대하여는 「영사조력법」 2)에 근거하여 외교부에서 검역감염병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6개 감염병에 대해 총 48개국 중 해당국 출국자를 대상으로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입국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3)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5개 감염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8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① 외교부장관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과 그 위험 수준, 행동요령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재국 재외공관의 연락처
2. 국가 및 지역별 안전 관련 소식
3.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령한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 현황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병에 대해 28개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1339(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 해외출국자 문자 정보 제공 현황('26.1월기준) >

감염병명	발송 국가	발송 횟수
페스트	몽골,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현지 도착 후 1회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멕시코,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뎅기열	네팔,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 디아, 콜롬비아, 태국,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마버그열	에티오피아	
홍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 자료: 질병관리청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④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 해외입국자 문자 정보 제공 현황('26.1월기준) >

감염병명	발송 국가	발송 일자
페스트	몽골,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입국 후 1일차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멕시코,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입국 후 1일차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입국 후 1일차, 8일차
에볼라바이러스병	남수단, 르완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입국 후 1일차
마버그열	에티오피아	입국 후 1일차

* 자료: 질병관리청

-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제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은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검역업무에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검역정보시스템의 입법체계를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검역정보시스템은 공·항만 입국자 검역, 항공기·선박·화물 등 검사, 격리·방역 등 수행을 위하여 검역·검사, 국제공인예방접종 현황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소독 결과 등록 등 검역관의 업무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검역조사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한

4) 「검역법」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것으로 보임.

< 검역정보시스템 >

- **(시스템 개요)**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라 공·항만 입국자 검역, 항공기·선박·화물 등 검사, 격리·방역 등 수행을 위한 업무 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근거: 감염병예방법 40조의5)	검역정보시스템 (운영근거: 검역법 제29조의2)
(유관기관) 행안부·법무부,건강보험공단 등	

- **(추진 경과)** 해외 감염병 입국자의 건강 상태 신고,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보고·통보 및 선박·항공기 검역 결과 전산화('08년~)
- **(주요 기능)** 검역, 검사, 국제공인예방접종 현황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소독 결과 등록 등 검역관의 업무 전반을 지원
 -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대상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검역조사 및 검역 현황 보고 지원
 - 의심입국자, 접촉자에 대한 감시 및 보고 체계 지원
 - Q-CODE 누리집(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운영을 통해 건강상태질문서를 전자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전자 검역체계 마련
 - 항공기·선박·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위생 상태 및 적재 화물 등 점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한다),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변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한다)
 2.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이 경우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 정보 수집 및 관리 지원

- 황열 및 콜레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현황 관리
- 유관기관(항공사·외교부·법무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대응 강화

□ 현행법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효율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 검역업무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입국정보, 건강상태, 예방접종 실시 내역, 역학조사 결과 등 개인정보 등임.

같은 조 제4항은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상 검역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검역업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보건위생관리 업무가 추가될 경우 자칫 검역대상 등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검역법」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 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2.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4.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 검역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입국정보,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검역법 시행령」

제4조의2(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대상자의 입국정보에 관한 사항
2. 검역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 검역대상자의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관한 사항
4. 검역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역법」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3. 관련기관 의견

- 질병관리청은 입국자 대면 중심 검역에서 정보 제공 및 시스템을 통한 유기적 대응으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로 전환하고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업무를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외교부는 출국자 대상 감염병 안내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우리 국민 안전 유의 대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01